#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학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243

발의연월일: 2022. 7. 1.

발 의 자:김학용・구자근・김성원

김태호 • 박성중 • 서범수

안병길 • 유의동 • 정운천

최춘식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(이하 "지정권자"라 함)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(이하 "촉진지구"라 함)를 지정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촉진지구 지정 단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반영 또는 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촉진지구 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공급촉진지구계획(이하 "지구계획"이라 함)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과정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구계획에 포함되는 토지이용, 교통, 인구, 환경 등에 관한 내용에 지역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, 촉진지구 지정 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권자와 사전협의한 사항에 배치되는 내용의 지구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어 절차적 개선이 필요함.

이에 지정권자가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(안 제28조제4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#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 여야 한다.

제28조의2제1항 본문 중 "제28조제4항"을 "제28조제5항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지구계획 승인에 관한 적용례)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구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지구계획 승인 등) ① ~	제28조(지구계획 승인 등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④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
	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
	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
	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
	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<u>④·⑤</u> (생 략)	<u>⑤</u> ・ <u>⑥</u> (현행 제4항 및 제5항
	과 같음)
제28조의2(촉진지구 조성사업에	제28조의2(촉진지구 조성사업에
관한 공사의 감리) ① <u>제28조</u>	관한 공사의 감리) ① <u>제28조</u>
제4항에 따라 지구계획 서류의	<u>제5항</u>
사본을 송부 받은 시장·군수·구	
청장은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	
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	
는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	
사를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공	
사에 대한 감리를 하는 자로	
지정하고 지도·감독하여야 한	
다. 다만, 시행자가 제23조제1	
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	
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